

2026년 「미디어 선도기업 육성」 지원사업 공고문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-0060호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차세대 방송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증·확산형 선도기술 사업화 과제를 발굴하고, 국내 기업의 성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「미디어 선도기업 육성」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. 1. 22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한국전파진흥협회장

1. 사업개요

□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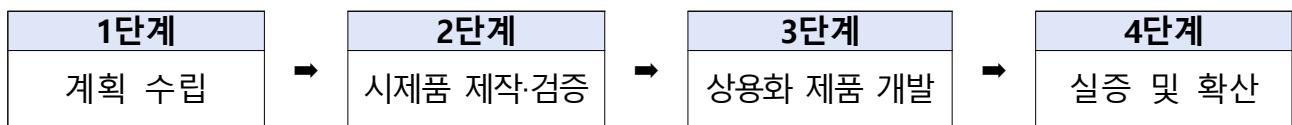
- (사업목적) 글로벌 협력기업과 연계한 차세대 방송미디어 서비스 사업화 공모사업을 통해 방송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
- (공고과제명) 차세대 방송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선도
- (사업기간/지원규모) 협약체결일 ~ '26. 12. 18.(금) /최대 5억원
 - ※ 컨소시엄 기업별 자부담 매칭(중소기업 30% 이상)
 - ※ 자부담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가능
- (지원대상) 기업 컨소시엄 1개
 - ※ 국내 중소·중견기업 2개社 이상 + 글로벌 협력기업(글로벌 공급사 또는 최종수요처 등)
- (사업 전담기관) 한국전파진흥협회
- (기대실적) 방송장비(제품·솔루션) 상용화 및 글로벌 확산

□ 세부 수행내용

- (계획 수립) 글로벌 협력기업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방송미디어 제품·솔루션의 전 주기적 사업화 추진을 위한 실증·확산 종합 계획 수립
- (시제품 제작) 제품·솔루션 기술 사양 및 구조 설계, 핵심 기능 구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, 기능·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검증 수행
- (상용화 제품 개발) 수요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·서비스 개발
- (시연회 개최) 개발된 방송장비(제품·솔루션) 활용성 및 경쟁력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시연회 개최

※ ‘한국전파진흥협회-기업 컨소시엄’ 공동 시연 행사 수행(상반기/하반기)

< 수행 요구사항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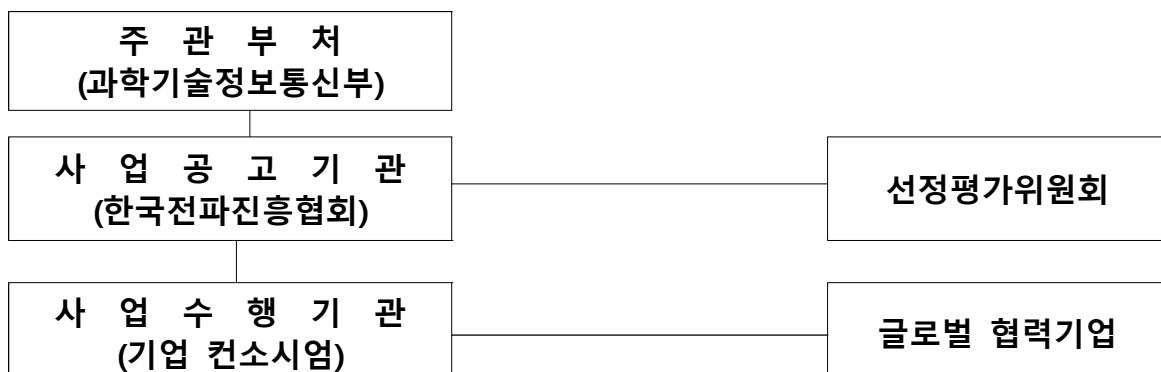


□ 추진체계

- (주관부처/사업공고기관)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한국전파진흥협회

- (사업 수행기관) 기업 컨소시엄

※ 구성요건 : 국내 중소·중견기업 2개社 이상 + 글로벌 협력기업(글로벌 공급사 또는 최종 수요처 등)



○ (사업주체별 역할)

구 분	주요 역할 및 기능	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전파방송관리과)	사업총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기본계획 수립 ○ 사업 추진 정책 수립 등
한국전파진흥협회 (사업공고기관)	사업공고 관리·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추진계획 수립 ○ 사업 운영 및 사업비 교부 및 정산 ○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정 및 성과 평가 계획 - 선정기관 확정 공고, 협약 ○ 사업수행 수시 점검 ○ 사업성과 관리 등
선정평가위원회	평가, 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계획서 심사 및 평가 ○ 사업평가 및 평가결과 수행
기업 컨소시엄 (대표수행기관 + 공동수행기관) (사업수행기관)	사업수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○ 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○ 결과 보고 등
글로벌 협력기업 (글로벌 공급사 또는 최종 수요처)	사업참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비스·솔루션 요구사항 정의 ○ 제품개발 및 서비스 검증 협력 등

2. 신청자격 및 방법

□ 신청자격

○ 국내 방송·미디어 분야 기업 컨소시엄

- ※ [구성조건] 중소·중견 방송·미디어 기업 2개社 이상 + 컨소시엄내 국내외 글로벌 협력기업(글로벌 공급사 또는 최종수요처)
- ※ [대표수행기관]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자 또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중견기업

○ 아래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

평가 대상 배제 기준

- ◆ 휴·폐업 기업 및 기관
- ◆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및 기관*(법인 및 대표자)
 - * 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
- ◆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및 기관
- ◆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및 기관
- ◆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기업 및 기관
 - * 단,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(만 19세 이상 34세 이하),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회계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함
- ◆ 최근 3년 이내 정부공모과제에서 제재 받은 기업 및 기관
- ◆ 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이 불가능한 기업 및 기관
- ◆ 신청한 분야에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및 기관
- ◆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기업 및 기관
- ◆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기업 및 기관
- ◆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및 기관

※ 「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」 제9조(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) ②항에 의거하였음

□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

- (신청기간) 2026. 1. 22.(목) ~ 2. 12.(목) 24:00까지
- (신청방법)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이메일 접수

< 서류 항목 >

서 류 명		부수	비고
1	신청 공문	1부	자체 서식
2	사업신청서	1부	별지 제1호
3	사업 세부계획서	1부	별지 제2호
4	신청기업 현황자료	1부	별지 제3호
5	참여확약서	1부	별지 제4호
6	개인정보 제공·수집·이용 동의서	1부	별지 제5호
7	글로벌 협력기업 협약서	1부	별지 제6호
8	사업자등록증 사본	1부	발행사이트 : 국세청
9	4대보험 완납증명서	1부	발행사이트 : 국민건강보험공단
10	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	1부	발행사이트 : 정부24
11	중소기업확인서	1부	발행사이트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* *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
12	법인 등기부등본	1부	법인사업자에 한함

※ 항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(예: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직전년도를 포함한 재무제표증명원 3개년)

- (제출처) 사업담당자 메일(김민재 과장, mj0509@rapa.or.kr)
※ 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

3.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□ 선정절차

- 사전평가(1단계) → 서류·발표평가(2단계) → 과제 선정

※ 전담기관에서 사전평가(평가적 합성 검토)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·발표평가를 진행하여 수행기업 역량평가 실시

- 사전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서류·발표평가 일정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며 서류·발표평가 불참 시 탈락 처리

< 선정평가 절차 및 평가 방법 >

구분		평가자	평가 방법	비고
1단계	사전평가	공고기관 (RAPA)	신청자격,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제출서류 누락 시,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2단계	서류·발표 평가	선정위원회 (외부전문가)	과제수행계획서,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

□ 평가기준

- (1단계, 사전평가) 신청자격,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적합성 검토만 진행

< 검토 항목 및 내용 >

구 분	내 용
신청자격 적정 여부	공고문 내 「평가 대상 배제 기준(4p)」 검토
신청서류 적정 여부	과제수행계획서, 별지 제1호~6호 등 신청서류 적정 여부
참여율 초과 여부	책임자 등 참여 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
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	부도, 자본잠식 등 재무건전성 부분
과제비 적정 여부	민간부담금 투입 비율 준수 등 과제비 산정 적정 여부, 비·세목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

- (2단계, 서류·발표평가) 서비스 아이디어, 사업화 가능성, 성장가능성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위주로 평가

< 서류·발표평가 항목 >

구분	평가항목	세부 평가항목	배점
정량심사 (10)	안정성	기업 유동자산	5
	성장성	3개년 매출액 증가율	5
사업기획 (20)	사업기획의 명확성 및 우수성	○ 사업계획서 목적 및 사업기획의 명확성 및 우수성	10
		○ 추진방법 및 전략의 구체성, 실천가능성	10
사업수행 효과 (40)	기술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	○ 보유 기술의 경쟁력, 우수성, 기술 활용 능력(비교우위 요소)	20
		○ 사업수행결과의 상용화 및 사업화 가능성(해외진출 포함), 성장가능성	20
수행능력 (30)	추진 전략 및 의지	○ 사업추진 의지 및 추진지원방안의 구체성	10
		○ 추진 일정(기획·제작, 상용화 등)의 적정성	10
	지원 효과성	○ 결과(물)에 대한 활용 계획 및 목표	10
합 계			100

- ※ 정량심사(10점)는 **대표 신청기관**의 기준 사업 안정성과 성장성을 평가함
- ※ 안정성 : 재정상태표 상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유동자산 1억미만(1점), 1~5억 미만(2점), 5~9억 미만(3점), 9~15억 미만(4점), 15억 이상(5점)
- ※ 성장성 : 5% 미만(1점), 5~10% 미만(2점), 10~20% 미만(3점), 20~30% 미만(4점), 30% 이상(5점)
- ※ 「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」 제9조(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) ③항에 의거하였음
- ※ 등점자 발생 시 「사업수행효과(40점)」 → 「수행능력(30점)」 → 「사업기획(20점)」 배점 순으로 평가 적용하여 순위 판별
- ※ 기존 선정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할 시 발표평가 차순위 순서에 따라 선정

- (평가위원회 구성) 외부전문가 5~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
 - (평가점수 산출) '평가위원'이 평가항목별 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 위원별 점수를 취합 후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* 산출
- ※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를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

□ 제외사항

-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,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 취소와 향후 5년간 협회 공모사업 참여 제재조치
- 최근 3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정부 지원·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와 추후 동일 사업 참여 제외
 - ※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(SIMS)을 통한 사업중복 수혜 검토 확인 절차 진행 예정
 - ※ 과제 차별성은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
- 사업 참여 기회의 형평성 확보 및 신규 기업 발굴을 위하여 직전년도 본 사업에 선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은 컨소시엄의 참여기업은 동일 사업에 대해 향후 2년간 참여를 제한
 - ※ 예시 : '25년도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'26년 및 '27년도 사업 참여 제한

□ 선정발표

- 협회 홈페이지 공지 통한 선정발표('26년 2월)

4. 사업 추진일정

주요 추진 일정

추진내용	추진일정											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사업공고 및 신청접수												
심사 및 평가												
협약 및 사업수행												
중간점검(중간보고서)												
최종평가(최종보고서)												
사업 종료												
사업비 정산												

5. 근거법령 및 규정

근거법령 및 규정

- 본 사업은 전파법 제8조(전파진흥기본계획),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8조, 제16조, 제23조, 제26조,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, 제17조, 제30조, 제32조에 근거하여 수행됨
- 본 사업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「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관리지침」 의해 수행·관리되며,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「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·관리규정」, 「ICT기금사업 공모사업 가이드라인」 및 부속지침을 준용함

6. 그 밖에 사업평가에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

□ 유의 사항

- 신청서 및 각종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(www.rapa.or.kr)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, 작성 시 관리지침을 반드시 확인 요망
- 제출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 사항이 있거나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마감일, 마감 시간 정상 접수분에 한하며, 접수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※ 시간 엄수, 사전접수 요망
-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 및 결과물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, 관련 조처(예,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)를 해야 함
- 이로 인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
- 사업수행기관은 지원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협회에서 지정한 회계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
- 문제가 발생한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등급에 따라 환수 절차를 진행함
- 협약기간 및 사업종료 후 상용화 건수, 매출액, 수상실적 등 성과 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함
-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실시에 협조하여야 함

□ 문의처

- 방송위성진흥팀 김민재 과장(mj0509@rapa.or.kr, 02-317-6059)